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67호

양남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4호(2010.04.01.)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18호(2015.10.15.)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6-29호(2016.04.1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6-110호(2016.12.0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4호(2022.01.27.)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63호(2022.04.07.)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189호(2022.12.01.)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55호(2023.04.20.)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영등포구 양평동1가 30번지 양남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업의 종류: 시장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양남시장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30번지
나. 시행면적: 1,956.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성명
1) 성 명: 양남시장정비사업조합(대표자: 강국진)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24길 4, 2층
2)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자: 김현동)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12개월
6.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3. 5. 16.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구분	세 부 내 역		
토지	필지수	면적	권리자수
	1	1,956.7㎡	41인
건축물	동수	연면적	권리자수
	6	2,053.22㎡	51인

8.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대지면적: 1,956.7㎡)

나. 건 폐 율: 68.5452%

다. 용 적 륜: 398.6106%

라. 높 이: 42m

마. 연 면 적: 13,603.8431㎡

바. 용 도 : 공동주택 및 판매·부대복리시설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분	주택규모 형별 (전용면적 기준)	세대수		
		조합/분양	임대	소계
전용면적 60㎡미만	59A형	18	-	18
	59B형	19	-	19
	44A형	2	18	20
	44B형	-	20	20
	29형	1	-	-
	28형	1	-	-
	소 계	41	38	79
전용면적 60 ~ 85㎡미만	-	-	-	-
전용면적 85㎡초과	-	-	-	-
합 계		41	38	79

10.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 없음)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다.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라.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마.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

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아.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자. 기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 됨.

끝.